



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시행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함.

-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에 의한 시스템 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대책 중 일부를 시행한 바 있음.
 - 정부는 2010년 6월 ‘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’을 발표하였으며, 이를 중심으로 2010년 10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도입하고, 2011년 1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 등의 제도를 개선함.
-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에 대한 선제적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됨.

■ 정부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납부의무자, 부과대상, 부과요율, 부담금 적립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함.

-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과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여 56개 은행권 기관에 부과됨.
-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차감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부과대상이나,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외화부채 계정과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.
- 부과요율은 0.5%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하나, 지방은행이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%를 적용함.
-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의 기존 재원과 구분계리하여 적립하며, 적립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, 대여, 스왑의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용함.
-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납부고지하고, 5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,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.

■ 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에 이어 이번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를 위한 3중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평가함.

● 동 제도 시행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,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 및 이에 따른 외채증가가 억제되고, 경영 건전성이 제고되며,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함.

(외환건전성 부담금 시행, 한은, 8/1)